현대프라힐스 소사역 더프라임 오피스텔 분양광고 4차

청약Home | 구글플레이스토어 |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청약 시 유의사항 ◆

※ '연습목적의 청약' 및 '자금(계약금) 부족' 등 계약의사가 없으신 분께서는 청약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연습청약' 등 청약고객의 이유없는 미계약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실수요자의 당첨기회 상실 등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사오니, 반드시 심사숙고 하여 결정하시고 청약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관련 견본주택 운영여부 및 관련 유의사항]**
당첨자라 하더라도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발열, 기침 등 의심 증상을 보일 때에는 견본주택의 출입이 제한됩니다.
- 마스크 착용, 체온 확인, 손 소독제 사용 등 감염 예방 수칙에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 코로나 19 확산 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호실 개방 및 서류 접수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 분양광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내용 미숙지로 인한 착오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오피스텔의 경우 청약자 '만 나이' 요건 기준일은 **분양광고일(2023.10.12.)** 기준입니다.

■ 인터넷 청약접수 및 전산추첨 : **본 오피스텔의 청약접수 및 분양받을 자의 선정에 관한 업무를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여 인터넷 청약 및 전산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청약자격 : 본 오피스텔은 거주지역 및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중복청약 유의사항 : 1인당 타입별 1실(건) 청약 가능하며, 동일인이 동일 타입에 2실(건) 이상 중복 신청하는 경우 청약신청 전부가 무효처리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접수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반행위 관련 계약취소 및 벌칙사항** :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을 받거나 전매제한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라도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하여야 함.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한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일정 및 장소**

구 분	청약신청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일 시	10월 17일(화) 09:00 ~ 17:30	10월 20일(금) 16:00 이후	10월 21일(토) 10:00 ~ 18:00
방 법	인터넷 청약 (은행창구 청약 시 은행영업시간까지)	청약Home 개별조회 (www.applyhome.co.kr 로그인 후 조회 가능)	견본주택 방문계약
장 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현대프라힐스 소사역 더프라임 견본주택 (경기도 부천시 중동 1131-5, 지하1층 CDS빌딩)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또는 토스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 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오피스텔	○	○	○	○	○

■ **본 오피스텔은 아파트 청약통장 순위와 무관하므로,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으며 청약홈에서 인터넷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되더라도 당첨자 관리 및 재당첨 제한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Ⅰ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본 건축물은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시행령 제2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동법 제5조 및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분양신고 대상이 아님**

■ 본 건축물은 경기도 부천시 건축허가과 - 89818 호(2022.05.06.)를 통해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임

■ 공급위치 : 경기도 부천시 소사본동 70-7외 6필지

■ 공급대상물

- 대지면적 : 사업부지 2,227.10㎡(오피스텔 : 123.96㎡)
- 연면적 : 25,676.88㎡(오피스텔 : 1,523.62㎡)
- 층별 용도 : 지하 5층 ~ 지하 1층(주차장, 기계실 등), 지상 1층(근린생활시설), 지상 2층 ~ 29층(오피스텔, 공동주택)
- 공급규모 : 지하 5층 ~ 지상 29층 2개동 중 오피스텔 총 3개 호실
- 본 건축물은 주상복합단지로서 공동주택(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의 시설이 복합되어 계획됨.

■ 본 건축물은 건축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내진성능이 확보되었으며 동법 제48조의3 제2항에 따른 산정한 내진능력은 진도 등급 Ⅶ - 0.204g

■ **입주예정일 : 2024년 07월중 예정(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정은 추후통보)**

■ 공급대상 및 공급규모

(단위 : 실, ㎡)

타 입	공급호실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주차장 면적	계약면적	대지지분
		전용면적	공용면적	소 계				
88	2	88.4529	31.2490	119.7019	3.5300	59.4804	182.7123	14.8163
96	1	96.5505	32.8634	129.4139	3.8531	64.9256	198.1926	16.1727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실, 원)

타 입	동	층	공급 호실	공급금액				계약금 (10%)		중도금(50%)					잔금 (40%)
				대지비	건물비	부가세	계	1회차	2회차	1회차(10%)	2회차(10%)	3회차(10%)	4회차(10%)	5회차(10%)	입주시
								계약시(D)	D+10일 이내	추후 별도 고지 예정					
88	102	2	1	260,772,021	215,570,890	21,557,089	497,900,000	5,000,000	44,790,000	49,790,000	49,790,000	49,790,000	49,790,000	49,790,000	199,160,000
88	102	5	1	283,465,838	234,331,056	23,433,106	541,230,000	5,000,000	49,123,000	54,123,000	54,123,000	54,123,000	54,123,000	54,123,000	216,492,000
96	102	3	1	295,511,945	244,289,141	24,428,914	564,230,000	5,000,000	51,423,000	56,423,000	56,423,000	56,423,000	56,423,000	56,423,000	225,692,000

■ 공통사항

- 본 오피스텔은 총 8실 2개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약 신청 전 홈페이지와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급금액은 타입별 면적, 층, 향 등을 감안하여 차등 적용되었으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니 청약 신청 시 견본주택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상기 공급금액에는 인지세, 소유권이전 등기비용, 취득세, 기타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본 오피스텔은 개정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거래 당사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소재지 주무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또는 행정처벌로 인한 계약의 무효 및 과태료 대납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오피스텔은 공동주택 발코니에 해당하는 서비스 면적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각 호실별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및 공용공간(기계실, 전기실 등)의 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호실별로 지하주차장 및 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시설별 대지지분은 오피스텔,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각각의 연면적 비율로 분할하였으며 오피스텔의 각 호실별 대지지분은 전용면적 비율로 배분하였습니다.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 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 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 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함)
- 분양가격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은 지정된 시점에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은 입주지정기간 내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계약금은 계약체결 시에 납부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합니다.
- 본 오피스텔의 중도금은 공급가의 50% 범위에서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대출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이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하고 대출을 받으신 경우라도 대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중도금 금액은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되며, 분양가격의 변제충당 순서는 연체료, 중도금, 잔금 순으로 함)
- 중도금 대출은 개인의 주택소유, 대출유무, 분양권 소유 여부 및 정부정책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상이하며 개인별로 대출금액이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시행위탁자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기관을 알선할 뿐 개별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및 대출 불가에 대하여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현장여건, 주변환경,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전자파, 전자기 장애, 분진 발생 여부 등을 확인 하신 후 청약 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공급금액 납부일정을 사전에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에 관한 세부 사항은 견본주택(☎032-328-2001)으로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Ⅱ 청약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 청약자격 및 유의사항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해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고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분양광고일(2023.10.12.)**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또는 법인. 단,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과 법인은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은 1인당 타입별 1실(건)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동일인이 동일타입에 2실(건) 이상 중복 신청하는 경우 청약신청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해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고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이 취소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한국부동산원은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각 타입별 200%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며 미계약 물량 발생 시에는 재공고 또는 당사에서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예정입니다.**

■ 청약일정 및 장소

구 분	청약신청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당첨자선정 및 동호수 결정방법
일 시	10월 17일(화) 09:00 ~ 17:30	10월 20일(금) 16:00 이후	10월 21일(토) 10:00 ~ 18:00	한국부동산원 전산프로그램 추첨에 의해 신청 타입별 무작위 결정
장 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현대프라힐스 소사역 더프라임 견본주택 (경기도 부천시 중동 1131-5, 지하1층 CDS빌딩)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또는 토스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은 PC[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스마트폰을 통해 청약가능하며, 청약 전에 청약통장 취급은행(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KEB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씨티)에서 인터넷뱅킹에 가입하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를 발급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터넷뱅킹 가입자는 청약신청금 납부를 위해 1일(1회)이체한도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PC 및 스마트폰 청약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위 모든 은행의 청약이 가능합니다.
- 법인은 인터넷 청약불가하며, 청약통장 취급은행의 지점* 방문을 통한 청약만 가능합니다.
 * 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KEB하나, 대구, 부산, 광주, 경남, SC제일, 전북 (제주, 씨티는 지점 방문접수 불가)

■ 청약신청 안내

구 분	내용
이용안내	• 거래은행 인터넷뱅킹 가입(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보유)하신 분으로 거래은행 출금계좌에 청약신청금 이상의 출금 가능한 잔액을 유지하고 있어야 함(이체한도 확인)
이용방법 및 절차	• **(모든 은행 이용자)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① 접속 :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청약신청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민간임대'→ 청약신청하기 ② 청약 : 인증서 로그인 → 주택명 및 타입 선택 → 청약 신청 시 유의사항 확인 → 연락처 등(연락주소, 연락처) 입력 → 청약신청내역 확인 및 청약신청금 출금계좌 번호, 비밀번호 입력 →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 청약접수완료 → 신청내역조회 ※ 스마트폰앱으로도 가능(**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청약접수 완료 기준은 17:30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완료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금 납부방법

구 분	청약신청금	내용
모든 타입 공통	**1,000,000원** (금일백만원)	• 청약 신청 시 : 청약Home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납부 • 주택청약 참가은행 (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KEB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씨티)에 입출금 통장 개설 후 청약신청금 이상을 예치하고 청약에 참가해야 함(인터넷 청약 시 거래은행 계좌에서 출금)

■ 은행창구 접수 시 구비서류

<table>
<tr><th>구 분</th><th colspan="3">구비사항</th></tr>
<tr><td rowspan="3">일반
공급</td><td>본인 신청 시</td><td colspan="2">• 청약신청서(청약통장 취급은행 지점 창구에 비치)
• 청약신청금
• 청약신청금 환불 받을 통장 사본(청약신청자 명의)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주민등록표 등본 1통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제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td></tr>
<tr><td rowspan="2">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td><td colspan="2">·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td></tr>
<tr><td>인감증명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오피스텔청약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td>본인서명사실확인 방식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tr>
<tr><td colspan="2">법인 신청 시</td><td colspan="2">• 청약신청서(청약통장 취급은행 지점 창구에 비치)
• 법인 인감 도장 및 법인 인감증명서 1통(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1통 제출)
•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 대표이사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표이사가 내국인이 아닌 경우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td></tr>
</table>

※ 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KEB하나, 대구, 부산, 광주, 경남, SC제일, 전북 (제주, 씨티는 지점 방문접수 불가)

- 은행창구 청약접수는 상기 구비서류가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하며, 청약신청이 완료된 이후에는 구비서류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청약신청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아니하고 신청자가 기재(입력)한 내용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따라서 신청자가 신청정보를 착오로 기재하여 당첨된 경우,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에게 있으며, 사업주체 및 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견본주택에서는 청약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 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당사 사업주체 및 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는 당첨자 선정 시 신청자격 및 신청건수에 대한 확인은 하지 않으며,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사업주체는 계약체결 시 **동일인의 중복 당첨을 모두 무효처리**하오니 신청 시 착오 없으시길 바라며, 중복 당첨으로 인한 당첨 탈락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제출서류는 **분양광고일(2023.10.12.)**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입력)사항으로 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사업주체에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관련 서류를 청구하여 신청자격 유무를 대조, 확인 후 일치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고 전액 환불됩니다. 청약금 환불은 청약신청 시 신청자가 입력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합니다.** (단, 청약 시 제출하신 환불계좌 오류 및 환불불가 계좌일 경우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추첨 및 당첨자 발표

- 추첨 : 한국부동산원 전산 추첨을 통해 신청 타입별 동·호수를 무작위로 전산추첨하여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 **당첨자 확인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하여 전화로는 확인이 불가하며 개별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당첨자 발표 일시	당첨자 발표 장소
2023년 10월 20일(금) 16:00 이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 청약당첨조회 →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민간임대 당첨조회 메뉴에서 조회일 기준 최근 5일 이내 당첨발표한 단지에 한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 스마트폰앱으로도 가능(**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추첨 방법 및 안내사항

당첨자 선정방법	• 모든 청약 신청자를 대상으로 하여 공급 오피스텔 호실의 당첨자를 선정
동·호실 결정방법	• 한국부동산원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청약신청한 타입내에서 동·호수는 무작위로 추첨 결정함
기타사항	• **타입별 200%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며, 예비당첨자의 계약일정은 유선을 통하여 안내 예정입니다.** • **미계약 물량 발생 시에는 재공고 또는 당사에서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예정입니다.**

■ 청약신청금 환불방법

구 분	환불방법
환불대상	• 당첨자(예비당첨자) 및 낙첨자를 포함하여 신청자 전원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 이후. 단,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제외
인터넷 청약자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에 청약자가 신청 시 신청자가 입력한 본인 명의의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로 자동 환불
은행(창구)청약자	• 자동환불 신청자 : 청약 시 접수은행에 개설 된 청약자 본인명의 계좌로 자동환불을 신청한 자는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에 자동 환불 됨 • 자동환불 미신청자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 이후에 청약 접수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환불 받아야 함

- 청약 시 환불 신청한 계좌가 환불계좌 오류 및 환불불가 계좌일 경우 사업주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당첨자의 청약신청금도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고 일괄 환불되며 환불금액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환불계좌 명의자와 청약자 명의가 동일해야 환불이 가능합니다.)
- 청약신청금에 대한 환불 시 기간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Ⅲ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 계약기간 및 장소

계약체결 기간	계약체결 시간	장 소	계약금 납부
2023년 10월 21일(토)	10:00 ~ 17:00	현대프라힐스 소사역 더프라임 견본주택 (경기 부천시 중동 1131-5, 지하1층 CDS빌딩)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무통장 입금

- 계약금은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무통장입금(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 기재)하여야 하며, 입금 후 입금증을 지참하고 견본주택으로 방문하여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분양대금 납부계좌 외 계좌입금 또는 현장에서 직원 등에게 현금 납부하는 경우는 분양대금 납부로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 및 분양(공급) 금액 납부계좌

※ 분양자들께서는 분양대금(중도금 및 잔금 포함)을 반드시 공급계약서에 분양대금관리자로 명시된 납부계좌와 예금주를 필히 확인 후 분양대금관리자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급계약서에 명시된 계좌 이외의 계좌로 납부 시 분양대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납부한 분양대금은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BNK 경남은행	207-0122-7006-02	케이비부동산신탁㈜	입금 시 호실과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예 : “102동 501호 홍길동” → 1020501홍길동)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의 분양(공급)금액 납부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 기준으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시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필수서류	본인 신청시	• 계약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등본 1통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국내거소 사실증명서1통),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1통(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1통) • 계약자 인감도장 • 계약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통(오피스텔 계약용 및 설계변경 동의서 첨부용, 본인발급분)
	법인 신청시	• 법인 대표이사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법인등기부등본 1통 • 사업자등록증 1통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국내거소 사실증명서1통),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1통(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1통) • 법인인감도장(또는 사용인감도장) • 법인인감증명서 2통(오피스텔 계약용 및 설계변경 동의서 첨부용) ※ 사용인감도장 날인시 사용인감계 1통 추가 제출
추가서류	제3자 대리 신청시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공통 구비서류 외에 아래 서류 추가 제출 •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리인의 도장(인장)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견본주택내 비치)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오피스텔 계약 위임용)

• 상기 제 증명서류는 분양광고일(2023.09.13.)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계약자 본인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 제3자 대리계약(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본 오피스텔의 사용승인 이전에 건축물의 면적 또는 층수의 증감(增減) 등 분양받은 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변경을 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 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받으며 그 내용을 분양받는 자 전원에게 알립니다.
•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포기로 처리하고 별도의 통보 없이 사업주체에서 수의계약으로 분양합니다.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 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절취, 청약 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 및 계약은 취소하고 고발조치 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분양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인지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인지하지 않음으로써 추후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 최초 계약일 이후 미계약 호실에 대해 호수 및 면적, 공급금액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수의계약으로 진행합니다.
• 외국인이 본 오피스텔을 계약할 경우「외국환거래규정」제9-42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등에 의거 계약자 신고의무가 발생하며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또는 행정처벌로 인한 계약의 무효 및 과태료 대납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부동산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으로 수입인지 (기재 금액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10억을 초과하는 경우 35만원) 를 계약서 작성시점에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해당 수입인지는 소유권 이전등기 시 필수 제출 서류로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합니다.
• 본 공급계약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체결 시 계약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수입인지 사이트 https://www.e-revenuestamp.or.kr,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고 소인처리)
-「인지세법」제3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 (전매)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 (전매 포함) 체결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와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 (분양대금과 프리미 엄을 합한 금액) 으로 등기원인서류를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관리비에 관한 사항은 별도 제정하는 관리 규약의 기준에 따릅니다.

■ 중도금 대출 안내

• 대출기관 : 추후별도 고지 예정
• 대출일정 : 추후별도 고지 예정
• 대출금액 : 시행위탁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에서 **중도금 무이자 조건**으로 50% 범위 내에서 중도금 융자 알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단, 정부정책 및 금융권 그리고 개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대출조건은 변경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본 오피스텔의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는 시행위탁자가 납부하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지는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사업주체 분양사업장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정부의 대출관련 정책 및 대출 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서 계약자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금융기관의 선정은 정부의 금융정책 및 금융기관의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중도금 납입예정일은 조정될 수 있으니 이에 따른 내용을 인지하고 계

약을 진행합니다.

- 중도금 대출은 지정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이 가능하나 정부의 대출 관련 정책 및 대출 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에 따라 시행위탁자의 중도금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 설정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등은 대출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 분양사무소 및 견본주택은 대출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되며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율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계약자는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합니다.
-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아니하거나 대출 불가로 인한 현금으로 직접 납부 또는 입주지정기간 전에 중도금을 상환하는 등의 이유로 사업시행자에게 대출이자가 발생하지 않은경우 수분양자는 그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수분양자에게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 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 대출 불가사유로 인해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하여 계약금(공급금액의 10%) 이상 납입 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며 계약금(공급금액의 10%) 부족 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은 1인 최대 건수 및 대출금액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및 법인 계약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며, 중도금 대출 불가시 본인 자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다주택자 및 다세대 계약자의 경우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대출가능여부를 사전에 금융기관에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선정된 중도금 대출금융기관의 특유성 및 대출 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 정책에 따라 중도금 대출 신청 전 일반임대사업자 등록 및 일반임대사업자등록증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Ⅳ 기타 계약자안내

■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 본 오피스텔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6조의 3 및 시행령 제9조의 3을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분양권 전매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 분양권 전매 관련 내용은 관련 법규의 개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권 전매는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부동산 시책에 의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준공 및 입주예정일

- 입주 예정일 : **2024년 7월 예정**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별도 통보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분양대금을 실입주지정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입주가 가능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천재지변, 전염병 발생 또는 사업주체의 귀책사유와 관계없는 문화재 출토, 행정명령, 민원, 법원의 공사 중지 결정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승인이 지연될 경우에는 사업주체는 이를 계약자에게 통보하기로 하며 이 경우에는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 지급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각 호실별 인테리어 공사는 입주지정 개시일 이후 잔금완납 후에 가능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내에 잔여 분양금액 중도금 및 잔금 연체료 등을 완납하고,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모든 서류 및 비용(계약금 중도금 대출 상환 영수증 또는 계약금, 중도금 대출에서 담보대출로 대환되는 은행확인 서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 및 비용, 선수관리비 납부 영수증, 보증수수료 납부영수증, 계약금 중도금 대출이자 납부영수증 등)을 사업주체에게 제출 또는 납부한 후에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 시 사업주체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선정된 관리주체와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가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관리태만으로 인한 문제, 동파, 결로, 분실, 도난, 파손은 사업주체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 특정일자를 통보하여 입주자 사전방문 행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통지는 우편으로 하고 입주자 사전점검 미참석자에 대한 별도의 사전점검은 없습니다.)

■ 관리형 토지신탁 관련 사항

• 본 공급물건은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위탁자인 “한송건설산업 주식회사”와 시행수탁자인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시공사인 “현대아산 주식회사”, 대출금융기관 등 간에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 방식으로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분양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 본 공급물건은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신탁사업에 의거 공급되는 물건인 바,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한송건설산업 주식회사”와 시행수탁자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간 신탁해지 등의 사유로 “신탁계약”이 종료 또는 해제되는 경우(개별 수분양자에게로의 소유권 이전 포함), 본 사업상 시행자의 지위에 기한 시행수탁자의 모든 권리·의무는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한송건설산업 주식회사”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되며, 이에 따라 시행수탁자의 수분양자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도 공급계약서 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한송건설산업 주식회사”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됩니다.
• 본 공급물건은 토지신탁사업에 의거하여 공급되는 재산이라는 특수성을 인지하고 분양계약자는 시행수탁자인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를 상대로 준공 건축물의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으며, 하자 보수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한송건설산업 주식회사” 및 시공사인 “현대아산 주식회사”에게 있습니다.
• 분양대금은 토지비, 공사비, PF대출금 상환, 기타사업비 등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급물건은 [2021-건축허가과-신축허가-62]에 따른 주상복합 신축사업으로, 해당 건축허가 조건에 따라 본 공급물건의 사용승인(준공)을 위해 관련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기반시설 등 공사를 필수적으로 완료하여야하며 분양대금이 기반시설 등 공사비로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본 공급계약상 내용 외 수분양자와의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을 근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
• 본 공급계약과 관련된 분양대금은 반드시 공급계약서에 규정된 시행수탁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이를 유효한 납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V 기타 유의사항

■ 공통사항 (이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주택 청약 및 계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공급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본 오피스텔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호수별 대지지분은 오피스텔의 총 대지지분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하였습니다.
• 호수 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

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본 오피스텔의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각 호수 마감자재 내용은 호수타입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및 모형 등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선수관리비가 부과됩니다.
- 입주 시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간(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 입주 지원을 위한 업무시설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입주 개시일로부터 3년간(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 입주자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하자보수를 위한 업무시설 및 하자보수용 자재 보관 장소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시설(학교, 도로, 공원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중인 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오피스텔의 공급가격은 각 호수의 타입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호수타입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시행사, 신탁사,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중도금 대출,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계약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징구)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합니다.

■ 주변현황 및 단지배치

-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호수는 가로등 및 야간 조명, 주차장 진·출입 차량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치 상 쓰레기 분리수거함 인접호수에는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 기반시설(도로, 공원 등)은 시공범위가 아니며, 세부사항은 해당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도로 제공된 대지 및 공개공지 등에 대하여 입주자가 유지 관리 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CCTV와 주차장 카메라의 설치 및 촬영은 입주자 및 입점자의 방범과 편의성을 위해 설치되므로 동의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위배로 보지않음을 인지바랍니다.
- 단지 내 남측과 북측에 공개공지가 설치되어 소음, 분진, 프라이버시 및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입주자들이 임의로 폐쇄 할 수 없습니다.
- 단지주변은 상업지역으로 도로, 공개공지, 시장, 통행로 인접, 주변 상업시설 등으로 인해 소음, 진동,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조경식재 및 조경시설물, 급배기시설(환기구등), 지하주차장 천창, 쓰레기 분리수거함, 재활용 창고, 실외기,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의 위치 및 크기, 형태는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인접한 일부 호수는 조망, 일조의 일부 제한 및 냄새 및 소음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외부의 인접대지 레벨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단지 경계부에 보행통로 등은 길이, 폭, 형태 등 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지의 대지 경계선 주위 개발계획은 주변 환경 및 외부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설계변경이 수반 될 수 있고, 이에 대한 개별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공용시설(엘리베이터, 주차장, 편의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의 경우에는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호수의 주출입구, 엘리베이터홀, 계단실 등의 공간은 호수공용부분으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녹지, 조경 식재 및 시설, 포장, 조경부대시설, 동선계획 등의 면적, 위치, 규모, 수량, 크기, 색채, 형태 등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세부계획에 따른 단지 내 도로선형, 산책로 등의 동선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부대시설 등의 실외기 등은 지상2층 하부PIT에 설치(입주시 이용편의에 의해 설치공간은 변경 될 수 있음)됩니다.
- 지상2층 하부PIT 실외기 설치공간과 인접한 호수 및 상가에서는 소음 및 진동, 냄새, 분진 등 피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조경선형, 바닥포장 및 세부 식재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본 건물의 지층 및 PIT층, 옥상정원 내 수목 식재로 인해 일부 조망권이 간섭 받을 수 있으며, 또한 본 공사시 식재계획은 변경이 될 수 있으므로, 수목의 높이 및 배치는 모형 및 CG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동 및 부대시설의 외관(입면, 창호, 난간, 로고 등의 형태 및 색), 공용부분의 계획(조경, 주동출입구, 지하출입구 등)은 실제 시공 시 설계 개선, 시공성, 편의성, 구도 등의 개선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이로 인하여 시행사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본 단지의 지상1층 주차장입구 방재실과 근린생활시설 사이에 설치되며, 이로 인한 냄새 및 소음, 분진 등 사생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1층 주동출입구(남쪽과 북쪽) 및 상가 주변에는 자전거보관소, D/A(환기구), 썬큰 등이 설치되며,특히 근린생활시설 101호, 103호,118호에 D/A(환기구) 및 소방시설의 설치로 구조물, 그릴창, 그레이팅, 난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환경권 및 생활권, 조망권이 일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상세 위치는 설계도 및 분양자료 등의 시설물 안내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에 설치되는 2층하부 PIT 및 옥상 산책로는 코스, 자재 및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 출입용 엘리베이터 및 계단은 102동 남측에서 지하 1층에서 지상1층에 설치되어 주거부분과 비주거 부분의 수직 동선이 분리 되어있습니다.
- 단지 내 시설물 명칭, 등은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전거 보관소는 1층 각동 출입구 주변 등에 설치되며, 위치와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이 간섭받거나, 소음피해 등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주동 형태 및 배치 특성 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동간 거리, 호수 별 창호 위치 등의 상이에 따른 경우
 2. 본 계약물건의 계약체결 이후 기존인접건물,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등과 배치 상 호수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른 경우
 3. 공공장소인 공개공지과 필로티, 부대시설, D/A(환기구),소방시설, 썬큰, 관리사무소 및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쓰레기 분리수거장, 자전거보관대,가스정압기, 산책로 및 경비실, 주차관리실, 방재실 등의 설치 및 통행에 따른 경우
 4. 단지 내 주출입구, 부출입구, 주차 출입구, 부대시설, 경비실 등 단지 내외 시설물 등의 설치로 인한 불편
- 외부시설물, 오피스텔 외관 및 색채, 줄눈 형태, 동 현관 및 저층부 석재, 마감 패턴, 옥탑 및 지붕디자인 및 마감재료, 부대시설 외관 등의 세부 디자인은 단지 외관 차별화를 위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외부 마감에 따라 오피스텔에 부착되는 장식물과 난간, 기타 부착장식물, 경관조명 등은 인접호수에 소음 및 눈부심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각 동 저층호수는 주변 도로와 기존인접건물 및 주변건물의 신축, 단지내 동간거리 향,층 등에 의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이 영향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시 해당 호수의 여건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향 또는 층수에 따라 일조량이 부족할 수 있으니 확인바라며, 일조량이 일조 수인한도를 만족시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시행자 및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의 저층부, 부대시설의 외부 입면디자인과 마감재 변경 및 기타 설계변경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외부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의 경우 수급불가 및 단종, 외부환경 및 현장여건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동등하거나 그 수준의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 등은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의 규모 및 배치형태, 내부구 조 등의 건축계획과 마감재, 집기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공자는 준공 후 입주자의 원활한 입주 업무 지원, 신속한 하자보수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부대시설의 일부를 일정기간동안 입주지원센 터(가칭) 및 현장A/S센터(가칭)로 사용하며, 시공자에게 이에 따라 발생하는 시설 사용에 대한 일체비용(임대료 등)을 요구하지 않기로 하며, 관련 민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이 부과됩니다.
- 단지 내 설치되어지는 부대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 입주 후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 부대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부대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경관조명으로 발생되는 유지, 보수 등에 대한 비용은 입주자가 관리비로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시설은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등이며 기타시설로 자전거 보관대,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설치될 예정으로 인접 저층부 호수는 외부통행으로 인한 소음 및 야간조명에 의해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부대시설의 구성 및 건축 계획은 공간 활용의 개선을 고려해 실 배치 계획, 구조, 창호의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 이후 설계변경 필요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부대시설의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별도로 설치되지 않으며 1층 분리수거장을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 경비실 위치, 지하주차장은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일부 변경 및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관리사무실,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시설은 기본 마감만 제공되고 집기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지하주차장, 부대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이용에 대하여 각 동별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배치 및 이용여건 등에 대해 충분히 확인 바랍니다.
- 근린생활시설 실외기, 탈취유니트 등으로 인한 주동의 저층호수 소음 및 조망권, 생활권 등에 불편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층 필로티 내부에 환기용(제연휀룸)D/A 및 그릴창이 설치,변경 될 수 있습니다.
- 1층 방재실 및 주차관리실 주변에 실외기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2층 하부 PIT층으로 인하여 사생활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PIT층 위층(2층)의 난방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당 건물은 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용도가 함께 설치되는 주상복합건물로 주차이용 등에 불편한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바라며 이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동 최상층은 엘리베이터 기계실, 펌프실, 소화용수, 정화조 통기관 설치로 인해 일부 소음, 진동,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상에 설치되는 지하주차장 환기용 그릴창, 제연용 그릴창은 본 시공 시 위치 및 크기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차 등의 충전시설 설치 법적 의무대상으로 지하주차장 내 충전시설 및 주차구획은 법적개소에 맞게 계획 하였으며, 추후 설치위치 및 개소는 법적개소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및 기타 공용면적에 포함 되지 않는 피트부분 등의 면적은 변경 사용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소방법규 및 시공상의 이유로 주차장 상부에 PIT가 추가 설치 및 층고 등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하층 지하주차장 줄눈은 공사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시 해당부위 코킹은 시공하지 않습니다.
- 트렌치 시공시 시공부위의 주차구획은 트렌치폭을 포함하며, 트렌치가 측면, 배면에 시공될 시에는 주차라인 마킹은 하지 않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용의 배관, 케이블 및 기타설비 등이 주차장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최종 사용승인도서에 준하여 시공되며, 현장여건에 따라 경미한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지상에 설치되는 지하주차장 환기용 그릴창, 제연용 그릴창, 채광용 천창, 계단 및 엘리베이터, 통로 및 지하층에 설치되는 기계실, 전기실, 저수조, 휀룸, 정화조, 소화용수, 저수조, 제연휀룸 등은 본 시공 시 위치 및 크기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 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다음 사항에 따라 일조·조망·사생활 침해, 소음·빛공해·분진·냄새·진동 발생 등 환경권을 침해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1. 지하주차장 기계실 / 제연FAN / 송풍기 / 실외기 등 에 인접한 호수의 소음, 냄새, 진동 발생 및 돌출물/시설물(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등, 위성안테나, 태양집광판, 피뢰침 등) 이 설치될 경우 일조, 빛공해, 조망간섭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 될 수 있습니다.
 2. 지상 2층 하부 PIT에 근린생활시설 등 의 실외기, 탈취설비 장비 등이 설치되며, 인근 호수에서 소음 및 진동, 냄새, 열기 등 환경권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옥외보안등 및 지하, 지상층 CCTV 설치 위치는 본 공사시 기능과 감시 범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력공급을 위해 필수 기반시설인 한전 공급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한전패드가 설치 될 수 있으며, 위치 등 부지제공 계약의 승계의무가 계약자에게 있으며, 설치 위치, 장소, 면적, 수량 등은 한국전력공사 협의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통신을 위한 통신 인입 시설이 설치 될 수 있으며, 부지제공 및 계약의 승계의무가 분양자에게 있으며 설치 위치, 장소, 면적, 수량 등은 통신 사업자와의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수 공급을 위하여 단지 내 인근에 맨홀이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및 제반사항은 수도 공급 업체와의 최종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설비 계획은 법적 기준에 따르며, 충전설비 위치와 수량은 변경이 불가합니다.
- 건물 전체 지붕 우수 처리를 위해 공용복도 및 전용공간의 천장 내부로 우수관이 관통 및 우수관 노출이 될수 있으며, 이에 따른 냄새.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차장 또는 기계.전기실 내에 지하수 배수를 위한 영구배수 펌프가 설치되어 입주 후 이에 따른 관리비용(하수도요금 부과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스배관 설치 계획에 따라 정압기 및 가스배관이 외부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옥내·외 소화전 위치는 법적 사항에 맞춰 그 위치가 계획 및 변경될 수 있으며, 설치에 따른 간섭 및 노출시공 등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건물의 소방관련 시스템 및 설비는 본 시공시 소방법 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차로 폭은 전층(지하1층~지하4층) 6~7.3m이고, 유효 높이는 통로구간 2.3m, 주차구간 2.1m로 트럭 등 높이가 높은 차량은 지하주차장 출입이 제한되며, 이사 차량은 단지 내 지상차로를 통해 이용 가능합니다.
- 소방, 설비, 전기 등의 배관 처리를 위해 지하주차장 및 근생 천장 공간에 설치되어 층고 축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설치위치 및 구간, 층고 등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에 법적 소방시설인 옥내소화전과 일부 주차면이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밀폐된 공간으로 환기 부족 시 결로현상 및 물고임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하부 및 필로티 하부 등 외기에 노출되는 배관의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사용에 따른 전기료는 단지 전체 공용요금으로 부과됩니다.
- 필로티 내외부와 저층부 주변에 제연휀룸 환기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소방활동 및 점검 시 작동되는 휀으로 인하여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필로티 및 PIT층에는 추가적으로 오배수, 우수 배관을 위한 공간이 추가적으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저수조, 전기실, 발전기실, 펌프실, 기계실 등은 입주자들의 공용 공간이며, 이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 및 사용 비용은 각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 지상2층 하부 PIT층 및 지붕층에 옥상정원이 설치되어, 인접호수는 소음 등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홍보물 관련 유의사항

- 공급안내문, 카탈로그 및 각종 광고홍보물에 표현된 CG(평면도, 조감도, 배치도 등)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본공사 공사시 단지 내 조경계획, 시설계획 등은 건축허가 도서 대비 동등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에 표현된 옥상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측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벽로고사인, 외벽마감, 식재, 바닥포장, 단지 내 조경 등의 계획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 시에 제시된 조감도, 호수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을 수인하기로 하며, 제반권리를 사업주체에 위탁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또한 홍보과정에서 주변 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등의 계획 또는 예정사항은 추후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 가능하오니, 관련사항별 관계기관에 반드시 본인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하여야 하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카달로그 및 견본주택에 표현된 단위세대 평면 등에 표현된 실의 규모 관련 치수 또는 면적 등은 제작시에 오탈자 및 오류가 있을 수 있음. 구체적인 사항은 견본주택에 비치된 도서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 설계관련

- 주동 배치계획 상 호수 상호간의 향이나 층, 위치에 따라 분양 받을 주택이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을 침해 받을 수 있으며, 또한 벽식구조의 특성상 층간, 호수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계약호수가 속한 동 및 층, 향, 호수에 따라 일조 및 조망, 채광, 통풍 조건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분양 CG 및 모형으로 색채계획을 확인해 주시고, 색채계획은 실제 적용함에 있어 분양 CG 및 모형의 색채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동일평형이 나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용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및 시공자 등에게 이의 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장생산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해 결정합니다.
- 천연자재(석재, 무늬목 등)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패턴,색상, 베인이 상이할 수 있으며, 자재 자체 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하며, 천연석으로 시공 되어 있는 경우 본 시공시 천연자재 특성상 갈라짐 현상이나 자연적 패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 및 특정 서비스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홍보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휴대폰/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서비스 운영 및 유지 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설계변경에 따른 담장 및 부속시설 등 공용부분의 위치, 시설 배치 면적과 각종 인쇄물 및 이미지, 모형 상의 설계사항은 동등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외관디자인 및 색채계획, 미술장식품계획, 조경계획, 야관경관계획 등은 보완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시 제시된 조감도, 호수평면도, 면적, 치수 등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본 공사 시 불합리한 설계의 개선 및 표현 오류, 오기의(공사) 정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구조, 성능, 제품의 사양은 동급 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건립안과 설계도서가 상이한 점이 발생되는 경우 견본주택대로 시공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단위호수 및 기타 설계변경 사항이 관련법령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설계변경 인허가를 진행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합니다.
- 특기 시방서에 별도의 시공기준이 없는 경우 사업주체가 선임한 감리가 승인한 시공계획서 또는 승인자재 제조사의 시공기준에 따릅니다.
- 내화성능시험이 요구되는 공종의 경우 인증표시는 사업주체가 선임한 감리가 공인기관 승인된 시험성적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입주 후 임의해체 및 부속물(디지털도어록/말밥굽 등)의 임의설치/교체에 따른 성능시험 결과는 시공자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전기/통신, 맨홀 등 인입 장비의 상세계획(설치면적 및 위치, 형태, 사양, 디자인 등)은 시공 단계에서 최종 확정되며 관련 사업자와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하향식피난구의 형태, 마감, 출입문 및 마감 등은 실제 공사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하향식피난구의 위치에 따라 결로, 단열, 미관, 보안 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본 모집공고의 가구 및 각종 내부 마감재는 실제 색상 및 패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및 신발장, 붙박이장 등의 가구 뒷면 및 바닥, 천정에는 바닥마감재 및 벽지, 천정지 등 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가구 및 고정형 가구 하부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이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콘센트, 조명스위치 등의 위치 및 수량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제시된 분양가에 포함되는 항목(가구, 등기구, 전자제품 등)은 개인적인 요구 및 취향에 따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호수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 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욕실 출입 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창호 사양 및 크기, 개폐 방식, 개폐 방향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또는 발코니에 보일러와 수전 및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 할 수 있으니, 창문 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본 공사시 호수 마감자재(수전 및 액세사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위치와 일부 변경 될 수 있으며, 화장실 천정 점검구 개수 및 위치 또한 변경될 수 있습 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 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는 미확장 발코니를 제외하고 발코니 확장을 고려하여 별도의 배수설비 및 수전은 시공하지 않고, 배수구 위치 및 배수/우수 입상관 위치는 본 공사 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 니다.
- 견본주택에 제시된 창호(유리, 프레임)의 강도는 본시공시 층수 및 위치에 따라 바람에 의한 영향의 차이로 인하여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 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은 훼손될 수 있습니다.
- 인접 아파트세대가 발코니를 미확장 한 경우 이와 접한 오피스텔 벽면에 단열재 등 이 시공되나 결로 발생 및 일부 벽체의 돌출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호수내 설치되는 대피공간은 화재 발생 시 하향식 피난구를 이용하는 곳이므로, 물건적재 및 기타용도로 사용을 금지합니다.
- 모든 호수는 화재에 대비하여 스프링클러 소화설비가 설치되며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헤드 및 감지기 위치, 개수는 견본주택 소방 준공용이므로 실제 시공시에는 소방법에 따라 헤드 위치나 개수가 변경 됩니다. 또한 각 발코니에 설치되는 측벽형 헤드에 따라 각방의 커텐박스 폭이 줄어들거나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호수는 엘리베이터 승강로가 인접하여 시공되며, 엘리베이터 운행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 될 수 있으므로, 모형 및 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형 및 조감도에 표현된 외벽의 마감 형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형 및 조감도에 표현된 각 아파트동(오피스텔 포함) 및 부대복리동 등의 외부에 표현된 장식물의 형태, 주출입구에 설치되는 문주의 형태 등은 실제 시공시 시공성 및 구조적 안전성을 고려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모형 및 카달로그에 표현된 조감도, 조경배치도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모형제작 및 그래픽 표현의 한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시공 시 구조 등의 안전성 및 입주민의 이 용효율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 주택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달로그,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사진은 사업주체에서 연출한 사항이 있으므로 건축허가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양지하신 후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하 며, 추후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모형 및 조감도에 표현된 오피스텔 외벽 색채는 인허가 협의 및 심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호수의 전실 및 홀 등의 공간은 주거전용부분으로 전용화 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호수내 욕실도 바닥난방이 일부분 적용되며, 샤워부스 및 욕조바닥에는 바닥코일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당 오피스텔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오피스텔 준공 전 약 6개월간 공사용 운행등 시험 운전을 거쳐 이관되며, 이에 따른 어떠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는 입주 시 인수인계 예정이며, 이사용으로 운행 중 인테리어 파손 은 입주자 책임하에 있으며, 시공사에 하자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 및 공용복도에는 별도의 냉난방 및 환기설비, 제습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호수 외 공용부에 설치되는 전기, 통신관련 시설물은 건축허가도서에 준하여 시공되나, 사용성 개선을 위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옥탑 및 지상 일부구간에는 무선통신 안테나 및 이동통신 기간사업 자 중계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추후 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내진설계가 되어 있으며, 동 기준에 의한 내진 능력은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 Ⅶ - 0.204g 임.

■ 단위세대 관련(견본주택은 아파트74A타입 임)

- 견본주택은 아파트 74A타입 옵션 적용이며, 오피스텔은 옵션 및 형태 등을 제외한 기본마감 등 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보조조명, 커튼, 소파, 거실장, 침대, 책상 등의 이동식가구, 디스플레이 가전, 소품 등은 호수연출을 위한 것으로 본공사 제외 품목입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본공사 및 하자보수 시 동등수준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 감지기, 유도등 및 스피커의 개수 및 위치는 견본주택용 소방시설로 본 시공 시 각 단위세대 타입별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그 설치 위치가 결정됩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사업주체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카탈로그,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 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환기구의 크기 및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으며, 실내 환기성능을 고려하여 위치 및 개소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수전류, 욕실 마감자재(양변기, 세면기, 휴지걸이, 수건걸이, 코너선반, 수건선반 등), 욕실FAN 등의 위치는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감재의 사양은 주택형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에서 차이점을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합니다.
- 마감자재 생산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한 제품의 품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5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마감자재 목록표의 마감자재와 다르게 마감자재를 시공·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당초의 마감자재와 같은 질 이상으로 설치합니다.
- 마감자재 목록표의 자재와 다른 마감자재를 시공·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주예정자에게 고지 됩니다.
- 견본주택 내 본 오피스텔의 도면 및 마감자재 목록표 등 비치되어 있으니, 방문하시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공사시 코킹 시공 부위, 폭, 두께 및 색상은 달라질 수 있으며, 본공사시 욕실 천장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타일류, 인조대리석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단차, 코너, 마감재접합부, 패턴 등은 실시공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호수,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환경, 부지 고저차, 옥탑부 디자인, 주동/창호형태, 벽체마 감, 디테일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창호는 공사여건에 따라 ±50mm범위 내에서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출입문은 실외기 용량 및 세탁기 건조기 사이즈에 따라 개폐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의 벽체 마감재 종류 및 두께에 따라 내부공간이 협소하거나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설치되는 가구의 사이즈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가전 기기 등 설치 공간의 크기는 견본주택과 같으며 그 보다 큰 가전 기기는 해당 공간에 설치될 수 없습니다.
- 각 호수 신발장 또는 창고, 기타 내부에 호수분전반, 호수통신단자함 등이 개별 또는 통합 설치되며, 이로 인한 일부 가구 및 선반의 구조가 견본주택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평면 타입에 따라 적용 품목(가구, 가전, 조명기구, 배선기구 등)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등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침실, 욕실 등의 벽체 두께 및 바닥 마감 두께에 변경에 따라 문틀의 폭(벽체 두께면), 문틀 높이 등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특성상 호수 내 가구배치, 평면배치, 기타 품목 시공위치는 입주자 개인별 변경 요청을 할 수 없으며, 변경 필요 시 준공 및 시설물 인수인계 후 입주자 개인이 직접 시행하여야 합니다.
- 본공사 커텐박스 시공시 간섭부분의 가구사이즈가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샤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호수 내 주방가구, 일반가구, 욕실장 및 거울설치 부위 등의 비노출면(바닥, 벽, 천장)은 별도 마감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1. 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2. 신발장, 침실 붙박이장 등 고정형 가구 하부 및 측면,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3. 주방가구와 접하는 측면, 후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4. 주방가구 하부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욕실 거울의 경우 보호페인트가 입혀졌더라도, 자재특성(은 성분)상 산성, 알카리성 세제와 쉽게 화학반응하며, 습기에 의해 변색이 발생 하는 경우가 있는바 욕실 환기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여야 하며, 입주 이후에 발생하는 유지 보수 및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하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의 책임입니다.
- 실외기실 내부는 물건 적재장소가 아니므로 적재시 에어컨 효율 저하 및 결로 에 의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물건을 적재할 수 없습니다.
- 수분양자가 임의로 전유호수 인테리어 공사 등을 수행하여 하자 또는 성능불량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게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등 일체의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호수 내 유리의 성능,방화 등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위치별로 특성이 다른 유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외부 창호는 내풍압 구조 검토에 따라 호수별, 층수별로 창호 사양(제조사와 모델, 형태 및 사양, 프레임 및 창짝 규격, 색상/디자인, 유리/하드웨어 사양, 분할 등)이 변경 및 축소될 수 있으며, 호수에 설치 되는 창호의 개폐방향, 날개벽체 및 분할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각종 도어 및 창호류의 사양(유리사양, 창틀 디자인, 손잡이, 창호크기, 루버형태, 재질, 색상, 제조사, 열림방향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의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 여 조명기구, 월패드, 분전함, 콘센트, 소방설비 및 배선기구류 등이 동등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건립되지 않은 오피스텔의 호수의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는 디자인, 사양, 개수, 설치위치 등이 건립호수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점검구 위치, 개소, 크기, 디자인은 본 공사시 변경되거나 추가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표시되거나 설치된 우/오수 배관의 위치, 온도조절기, 환기컨트롤러, 환기디퓨저, 바닥배수구, 선홈통, 수전류 등의 제품 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스위치, 대기전력차단장치, 일괄소등스위치, 주방TV, 월패드, 디지털 도어록 등 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모형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착공 및 설계변경 시 또는 실제 시공 시 배치, 구획 면적, 모양, 색채, 치수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하자담보 존속기간 및 하자보수

• 시공사는 공사도급계약서에 정한바에 따라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0조에 의거 적용 됩니다.

■ 분양사업자(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등)

구분	시행수탁자(신탁사)	시행위탁자(시행사)	시공사
상호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한송건설산업 주식회사	현대아산 주식회사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역삼동)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장차로5번길 33, 705호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화진포서길10
사업자등록번호	120-81-67944	516-88-01439	221-81-13834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고 및 표시사항

- 부동산개발업 등록자 : 케이비부동산신탁㈜ / 사업장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 (역삼동)
- 부동산개발업 등록번호 : 서울080129
- 사업방식 : 관리형토지신탁
- 공급대상물의 소재지·지목·용도·규모

① 소재지 : 경기 부천시 소사본동 70-7외 6필지
② 지목 : 대
③ 용도 : 근린생활시설(소매점) / 업무시설(오피스텔) / 공동주택(아파트)
④ 규모 : 지하 5층 ~ 지하 1층(주차장, 기계실 등), 지상 1층(근린생활시설), 지상 2층 ~ 29층(오피스텔, 공동주택)

■ 견본주택 위치 및 분양안내

대표번호	견본주택 위치	홈페이지
032-328-2001	경기도 부천시 중동 1131-5, 지하1층 CDS빌딩	http://prahills-sosa.com

•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고 청약 및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 / 본 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자세한 공사 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